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 안 변 호	1423
------------	------

2020. 6. 18.
도시계획관리위원회
수 석 전 문 위 원

1. 제안경위

- 2020. 4. 3. 김용연 의원 발의 (2020. 4. 8. 회부)

2. 제안이유

-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는 대상지주변 필지의 주민들이 입안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주민의견 청취기준을 강화하여 인접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주민의견 청취 시 대상지 인접대지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 소유자(세입자 포함)에게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발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. (안 제7조제1항)

4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기반시설 또는 도시계획사업에¹⁾ 관한 도시관리

1)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관련 사항을 우편으로 발송하는²⁾ 대상자를, 대상지의 주민 뿐 아니라 대상지 인근 주민들까지 확대하려는 것임.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, 법) 및 시행령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열람공고의 방법과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고, 이 조례에서 법령의 해당 사항 외에도,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·개량 또는 도시개발사업·정비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대상지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등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,

이 개정조례안은 대상지 뿐 아니라 대상지의 연접 대지 및 대상지 연접 도로(20m 이하³⁾) 맞은편 대지의 소유자·세입자에게도 우편 등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- 도시관리계획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는 주민의견 청취, 즉, 입안 과정에서 '계획도서 열람과 의견제출' 정도로서 이 때 주민들의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1. "도시·군계획사업"이란 도시·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
가.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
나.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
다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

2) 우편 발송시, 공문에 용지조서, 용지도 및 열람공고문 첨부

3) 20m 이하 도로는,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(도로의 구분)에서 중로 이하의 도로에 해당하며, 일반적으로 자치구가 관리함

직접적인 의견 제출과 이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의견 청취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,

생계에 바쁜 일반 주민들은 물론, 토지소유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도 열람공고⁴⁾ 간과할 수 있는 실정에서, 적어도 도시계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들에게는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개별 통보하여 주민이 계획 사항을 알게 하고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이 조례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됨.

- 이 개정조례안은, 이러한 입법 취지의 연장선에서, 도시계획사업 등이 대상지 뿐 아니라 인접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, 인근 주민들에게도 도시관리계획안의 의견청취 관련사항을 개별 통보토록 하여, 도시계획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보다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.
- 한편으로는, 대상지 또는 대상지 주변에 현수막으로 주민의견 청취 사항을 알릴 수 있고, 서울시의 열람공고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열람공고·결정고시 등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가운데(붙임2), 인근 주민 대상 개별 통보는 행정력 소요 대비 실익의 측면, 즉,

4)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를 포함한 입안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

주민의견 제출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거나 사익 우선의 의견이 중심이 될 때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.

- 그러나, 기반시설·도시계획사업 등이 시행되면 해당 지역사회의 생활환경과 자산가치 등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, 개별동지자 확대는 지역사회의 의견 청취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고, 이러한 노력은 도시계획의 정당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인근 주민이 행정우편을 받을 경우 대상으로 오인하거나 과도한 권리 또는 의무를 느끼지 않도록, 내용과 형식 면에서 대상지 주민 우편과 경중을 달리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.

담 당 자	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 정 희
연 락 처	02-2180-8206
이 메 일	rienrien@seoul.go.kr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236 331 405 367"><신설></p> <p data-bbox="236 539 544 575">② ~ ⑥ (생략)</p>	<p data-bbox="874 331 1410 501">3. <u>20m 이하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반대편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(세입자 포함)</u></p> <p data-bbox="836 539 1241 575"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<붙임 1> 주민의견 청취 관련 규정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·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·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[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(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·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]에는 도시·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·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·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내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·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·

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도시·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·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·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

제7조(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)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3항·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를 포함한 입안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,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입안시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소유자(세입자 포함)에게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·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5항에 따른 재공고·열람에 관하여 준용한다.

<붙임 2> 도시계획열람공고 및 결정고시 SMS 알리미서비스 (자료: 도시계획과)

1> 이메일 서비스 : 열람공고, 결정고시에 대한 알리미서비스 (서비스개시 '10.3, 신청자 29,408명)

- ① 내용 : 열람공고, 결정고시 내용[고시(공고)번호, 고시(공고)제목]을 이메일로 발송
- ② 방법 : 서울시 전체의 열람공고, 결정고시 사항을 이메일시스템을 통해 발송
- ③ 대상 : 서울시홈페이지에서 '부가서비스>소식지>도시계획열람공고' 서비스신청자

2> SMS 알리미 서비스 : 열람공고, 결정고시에 대한 알리미서비스 (서비스개시 '07.4, 신청자 9,928명)

(명칭변경 및 서비스확대 : 도시계획열람공고 알리미 → 도시계획열람공고 및 결정 알리미)

- ① 내용 : 열람공고, 결정고시 내용[고시(공고)번호, 고시(공고)제목]을 문자 메시지로 발송
- ② 방법 : 서울시 전체의 열람공고, 결정고시 사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
- ③ 대상 : 서울시홈페이지에서 'SMS알리미서비스'를 신청한 자

【2016~2019년 도시계획 열람공고·고시 알리미 서비스 현황】

(단위 : 건)

구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신청자 (누적)	이메일: 31,531	이메일: 31,188	이메일: 29,074 알림톡: 9,419	이메일: 39,858 알림톡: 9,754
고시 공고	1,983	2,244	2,024	2,450
이메일 발송	1,332,377	565,834	1,360,780	1,752,145
알림톡 (SMS)	168,281	197,430	271,212	333,191

- * 공고 및 고시건수에 따라 1주 내지는 2주에 한번 알리미서비스 시행
- * 현재 방식의 알림톡 알리미 서비스는 2018년 6월부터 서비스 제공